

【별표 5】 전문가 자문료 지급 기준

(단위: 만원)

전문가 등급	자문활동										
	세미나 ¹⁾			강의 ²⁾		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	수행기관 선정 평가	연구진 선정 심의	사업계획서 평가	중간/최종 보고서 평가	국외출장 자문
	발표	좌장	토론	1시간	초과	간당 최대 건	1회	1회, 서면 ³⁾	1건	1건	1일
수석고문	70	50	35	40	30	6	30	10	30	40	40
특급	70	50	35	40	30	6	30	10	20	30	30
1급											
2급	50	35	25	30	20	6	30	10	20	30	30
3급	40	30	20	20	15	6	30	10	20	30	30
4급	40	30	20	20	15	-	-	-	-	-	-
5급	30	20	15	15	10	-	-	-	-	-	-

- 1) 세미나의 성격·규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.
- 2) 최대 3시간까지 인정, 초과분은 1시간 초과시 시간당 금액을 의미
- 3) 연구진 선정 심의를 위한 대면 회의 시에는 자문료 대신 지침 제41조제3항에 따른 수당 지급
- 4) 기타 자문활동은 30만원 이내에서 자문의 성격, 난이도,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 지급
- 5) 세미나, 강의 및 대면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 및 시외 경비는 실비로 지급